

초등 학생 선도 규정

[시행 2022. 03. 01. 초등학생생활부]

제1장 총 칙

- 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인격 존중)**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, 동기,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,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.
- **제3조(공정성·일관성 유지)**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.
- **제4조(선도 방법)** 선도 방법에는 징계가 있다. 단,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초등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학생선도위원회

- **제5조(구성 및 의결)** ①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도 위원회에서 진행한다.
② 위원회는 교감, 학년부장교사, 학년기획교사,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.
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.
 1.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은 초등 학부모대표
 2.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영사 혹은 경찰공무원
 3. 판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
 4.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④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, 학생생활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.
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.
- **제7조(기록 및 사무처리)**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(심의결과)은 학생생활부장교사가 기록,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
② 학생생활부장교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관련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3장 선도 절차

- **제8조(사안 발생)** 학생의 이탈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[별표1] 세부 징계 기준의 교내봉사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안

의 경우, 교사는 학생생활부로 사안을 송부한다.

- **제9조(관찰 면담)** 학생생활부로 인계된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교감과 학생생활부장이 논의하여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.
- **제10조(위원회 회부)** 학생선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학생생활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,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- **제11조(선도 사안 서면보고)** 학생생활부장은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 단, 서면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사안 발생 일시
 2. 사안 발생 장소
 3. 사안 연루자
 4. 사안 내용
 5. 사안 발생 사유
- **제12조(위원회 소집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.
- **제13조(2차 심의)** ① 학생생활부장은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경우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사안설명, 의견청취,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.
 - ④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학생생활부장교사는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.
 - ⑤ 징계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 전학 처리한다.
- **제14조(징계의 종류)** 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(반성문), 교내봉사, 출석정지, 특별 교육이수, 권고 전학 중에서 선택하여 징계하며, 세부징계기준은 [별표 1]에 준한다.
 - ②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까지, 연간 30일까지 선택하여 징계한다.
 - ③ 출석정지 기간 중, 상해시 민항취 내의 사회봉사기관(양로원, 특수병원, 고아원 등)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, 그 활동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④ 출석정지 기간 중의 봉사활동 기간은 3일은 1일, 5일은 2일, 7일은 3일, 10일은 4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.
 - ⑤ 1일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.
 - ⑥ 출석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당해 봉사활동 기관의 장(혹은 봉사 담당책임자)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하다.
 - ⑦ 출석정지(1회 10일까지)와 교내봉사(1회 10일까지)를 함께 징계할 수 있다.
 - ⑧ 특별교육이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1회 10일까지 이수한다.
- **제15조(학교장 재심요구 및 결의)** ① 학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.

- ④ 재심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재심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.
- ⑥ 학교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전체 교무회의를 통한 재심의가 가능하다. 이 경우 의결은 초등 교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□ **제16조(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)**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.

- 1. 심리상담 및 조언
 - 2. 일시보호
 - 3. 치료를 위한 요양
 - 4. 학급교체
 - 5. 전학권고
 - 6. 기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제①항 제1,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.

□ **제17조(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)**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.

- 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 - 2.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헐박의 금지
 - 3. 학급교체
 - 4. 권고 전학
 - 5. 교내 봉사
 - 6. 출석정지(출석정지+교내봉사)
 - 7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가해학생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.

□ **제18조(통보)** 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.

- 1.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개시 1일 전까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한다.
- 2. 징계내용, 징계기간 중 준수사항, 지도 프로그램,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, 학생생활부장 또는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
제4장 해 제

□ **제19조(징계해제)** 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려졌던 징계 및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- ② 뚜렷한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권고전학 처리한다.

□ 부 칙 <2022. . .>

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세부징계기준(제18조 제1항 관련)

분류	세 부 내 용	징계의 구분					
		반성문	교내봉사	출석정지		권고전학	비고
				출석정지	교내봉사		
수업	1.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.교사에게 불손한 언행(욕설 및 폭언, 폭행 등)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.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	○	○				
	4.수업을 거부한 학생	○	○				
	5.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.백지동맹을 주도했거나 선동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7.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8.수업 중 음향기기를 청취한 학생(2회 이상 발견)	○					
	9.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(2회 이상 발견)	○					
준법 · 공중 · 도덕	10.교내·외 폭행 학생	○	○	○	○		
	11.교내·외 집단폭행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12.따돌림(집단적 따돌림 포함)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13.괴롭힘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	
	14.교내·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(1차) - 출석정지/퇴학/학부모 각서	○	○	○	○		
	15.교내·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(중·고 통합 2차) - 권고전학 및 퇴학					○	
	16.교내·외 협박, 감금, 금품 및 물품 갈취 학생,	○	○	○	○	○	
	17.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빌려서 안 가져오는 경우	○	○	○	○		
	18.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	
	19.흥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20.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1.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	○	○	○	○		
	22.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·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	○	○	○	○		
	23.품행이 불량하여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	○	○	○			
	24.학생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5.공안국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26.공안국에 구속, 석방된 학생	○	○	○	○		
	27.인장 또는 제증명(사인)을 위조 또는 고의로 파기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8.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			○	○	○	
	29.불건전한 문서를 은닉, 탐독, 제작,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0.형법상의 유죄로 판결된 학생			○	○	○	
	31.학생을 선동하여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2.교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33.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4.도박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35.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		
	36.불온한 물건, 불량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	○	○				
	37.성희롱(성적 수치,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), 성추행, 성폭행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8.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39.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	

분류	세 부 내 용	징계의 구분					
		반성문	교내봉사	출석정지		권고전학	비고
				출석정지	교내봉사		
사이버 관련	60.사이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(절도)	○	○	○			
	61.사이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(악플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SNS상에 올리는 행위)	○	○	○	○	○	
	62.사이버 상이나 매체를 이용해 공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63.학교 네트워크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		
	64.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한 학생	○	○	○			
	65.학내망의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6.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학생	○	○				
	67.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8.음란 화상 채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	○	○	○	○		
	69.불법 게임 머니를 사고판 학생	○	○	○			
70.학교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글을 올린 학생	○	○	○	○	○		
기타	71.1년 이내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하며, 학교 급(중·고)과 상관 없이 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4회 이상 받을 때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.						
	72.동일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4매 이상이 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						
	73.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줄 수 있다.						
	74. 동일 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6매 이상이 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		○	○	○		
	75.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다니는데,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(스토킹)		○	○	○	○	
	76.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(최초 진술서)						가중처벌
	77.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사안을 제보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(최초 진술서)						징계경감
	78.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제보자나 사실대로 진술한 학생에게 보복을 한 행위가 있을 때					○	

[별표 2] 휴대폰 및 음향기기 관련 기준(세부징계기준 9번 관련)

휴대폰 및 음향기기	· 수업 시간 중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.(적발 시 회수) - 회수 후 일주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.
------------	---

[별표 3] 통학차량 승차규칙 및 행동 안내(세부징계기준 43~47번 관련)

<p>□ 학교버스 탑승 규칙</p>	<p>통학 차량은 학교 시설의 연장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이 통학 차량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.</p> <p>가. 학생들은 정해진 통학 차량을 타야하고, 통학 차량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는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다.</p> <p>나. 통학 차량을 탑승한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다. 버스가 운행 중에는 몸을 앞으로 향해서 앉아야 하며,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다.</p> <p>라. 버스 안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으며, 버스 안이나 창밖으로 물건 등을 버리지 않는다.</p> <p>마. 안전을 위하여 팔, 다리, 머리 등을 버스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.</p> <p>바. 통학 차량은 공동시설이므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사. 통학 차량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는다.</p> <p>아. 학생들은 차량담당 지도교사, 운전기사, 차량보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.</p> <p>자. 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도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학차량 규칙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하고, 무거운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, [별표 1] 세부징계기준에 따라 통학차량 탑승을 제한한다. 단,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한다. -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받은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통학차량 탑승 금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 <p>< 통학차량 규칙 위반 정도 ></p> <p>▶ 가벼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통학차량 운행 중에 이동한 경우 ◦ 버스 안에서 먹거나 마신 경우 ◦ 버스 밖으로 물건을 버린 경우 ◦ 통학차량 안에서 소란스럽게 한 경우 <p>▶ 무거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통학차량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버스를 탄 경우 ◦ 통학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◦ 통학차량 안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◦ 통학차량 담당 지도교사, 운전기사, 차량 보조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◦ 버스 안에서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서로 다툰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